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4
------	-----

제출연월일 : 2006. 5. 26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물품관리조례를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개정·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각 실·과의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
- 나.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과 사무처리 등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기증품의 취득시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심의결과 통보 및 기증사실 보고, 수령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11조)
- 라. 물품운용관을 물품의 일시보관 책임자로 추가지정(안 제20조, 제21조)
- 마. 관련 법령의 변경(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6-300호 (2006. 5. 1. ~ 2006. 5. 22.)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경남도 회계과-1907(2006. 1. 27.)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물품관리조례”를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물품운용관과 물품관리책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3항 중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 중 “청·소의 장이 “를 ” 물품관리관은 “으로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

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 를 “(장부의 작성)” 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 중 “별도 조제” 를 “별도 작성” 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 를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1 물품의 품종 및 상태구분의 품종구분 기준 제1항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명 :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제 명 :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u>물품관리책임공무원</u>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u>물품운용관</u> 과 <u>물품관리책임공무원</u>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u>물품관리관과 물품 운용관, 물품출납원</u> -----.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생 략)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현행과 같음)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u>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u>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주관실·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u>지방재정법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u>제113조</u>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을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청·소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수령 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u>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u></p> <p>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p>	<p>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 제></p> <p>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대비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를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 제></p>
<p>(별표 1)</p> <p>물품의 품종 및 상태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종류 (생 략) ○ 품종구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 략) 나.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다. (생 략) ② 소 모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라. (생 략) ○ 물품상태 분류기준 (생 략) 	<p>(별표 1)</p> <p>물품의 품종 및 상태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종류 (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현행과 같음) 나.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② 소 모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라.(현행과 같음) ○ 물품상태 분류기준 (현행과 같음)